(중견기업정책과 사무관 김동효, 044-000-0000)

2124164.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(제정) : 이원욱(더불어민주당), ’23.9.1

Ⅰ. 관련 부처·기관·단체 의견 : 신중검토

□ 제정안은 ESG 관련 부담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어 중견기업의 ESG 경영 도입 현실을 감안해 신중검토 필요

○ 제14조*와 제53조** 등 법안 일부가 기업의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경영 촉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와 달리 규제로서 작용해 중견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

* 제14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이상의 중견기업은 환경·사회·지배구조 경영을 '공시하여야 한다'고 명시하여 관련 공시로 인한 부담 발생 우려

** 제53조는 각 호를 통해 제22조(제23조)에 따른 검증기준(품질관리기준)을 위반하여 거짓 검증보고서 작성, 검증보고서 기재 누락 또는 거짓 기재한 자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, 검증기관들이 중견기업에 무리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우려

○ 중견기업들은 ESG 경영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, 도입에 소요되는 비용·인력 부담으로 인해 실제 도입은 부진한 상황

- ‘ ’21년 중견기업 실태조사’ 결과 ESG 경영을 도입한 중견기업은 25.5%(제조 31.1%)로 나타났으며, 도입 애로 사항으로 ‘예산 및 인력 부족’(30.8%), ‘ESG 도입·실천 효과 불확실’(20.6%), ‘다양·복잡한 ESG 평가기준’(15.7%)을 꼽음

* 애로사항 : ①예산 및 인력 부족(30.8%), ②ESG 도입·실천 효과 불확실(20.6%), ③다양하고 복잡한 ESG 평가기준(15.7%), ④인센티브 부족(14.2%), ⑤경영진의 관심·의지 부족(13.3%) 順

□ 법제화를 진행할 경우, 기업에 대한 의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분은 최소화하고, 중견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할 것